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890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12년 6월 25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박기열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제770호)과 장환진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제776호)을 서울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(2012. 6. 25.)에서 일괄심사한 결과,

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2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·보완하여 「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」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

2. 대안의 제안사유

- 박기열 의원 외 17명과 장환진 의원 외 11명이 각각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일반노선버스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현행 3개소 이내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,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현행 규정을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완화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음

따라서 2건의 개정조례안과 서울시가 제출한 의견 일부를 통합·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

3. 대안의 주요골자

- 가. 마을버스 노선이 공고되면 공고된 노선의 운행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하도록 함(안 제10조제2항)
- 나. 수송수요의 급격한 변동 등 긴급한 노선 조정 사유 발생시 노선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0조제3항)
- 나.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를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(안 제10조제4항)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0조 (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) ① 시장은 정기 또는
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마을
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
(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)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에 마을버스의
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운행노선 등 운행계
통을 정하고 이를 시보에 공고한다.
-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노선을 신뢰하고 진입
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상 운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
공고된 노선의 운행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
으로 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송수요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
여 마을버스 노선을 시급히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노선을

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그 시기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버스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(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)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,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.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⑤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자동차의 배차시간 간격이 25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 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여야 한다.
- ⑥ 마을버스의 첫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 이전에 운행을 시작하여야 하고, 막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(대안)
제10조 (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) ① (생략)	제10조 (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p>〈신 설〉</p> <p>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노선을 신뢰하고 진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상 운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된 노선의 운행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〈신 설〉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송수요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시급히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그 시기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노선을 신뢰하고 진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상 운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된 노선의 운행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송수요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시급히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그 시기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버스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(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)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, <u>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버스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(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)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, <u>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.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